

4 학생의 국제교류에 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교류대학과의 상호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유학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술 교류협약에 의거하여 수업참여 및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본 규정에서 단기 해외연수라 함은 본교의 재학생이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해외 교류대학이나 본교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 및 문화연수를 말한다.

③ 본 규정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체결한 학생교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대학이 파견한 학생을 말한다.

(조 신설 2012.3.1)

제 2 장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

제3조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본교와 협약된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유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단기해외유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3장의 단기해외연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26, 2017. 8. 28)

1. 지원당시 3학기 내지 6학기 중인 자.(단, 6학기 중인 자의 유학 기간은 6개월에 한한다.)
2. 평점 평균 2.80이상인 자.(단, 평점 평균 2.8 미만일지라도 직전학기 평점 2.8 이상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조 (신청) 장·단기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단기 해외유학 신청서를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장의 승인을 거쳐 국제협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9. 8. 29)

제5조 (선발)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1. 26)

1. 평균 평점, 어학성적, 면접점수 등으로 총점을 산출하며,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특정학과와의 교류협약으로 인한 교환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요구 할 경우 특정학과 학생들

로만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경비) ① 유학기간 동안의 매학기 소정 등록금은 대학 간 협약에 의한다.

② 유학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체재기간 생활비는 대학간 협약에 의하며, 경비부담에 관한 보증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9)

제7조 (승인) 유학의 최종 승인은 총장이 한다.

제8조 (교과과정 이수)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① 매학기 수강신청 이수 범위는 최소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3.1)

② 본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 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상에 있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이를 전공 및 일반교양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유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대체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학점인정) ① 해외유학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 대학교로 우송된 것으로서, 소속 학과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는 이를 검토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유학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교 학업성적표에 해외유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누계에 합산하지 않음으로 성적환산을 하지 않는다. 단,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및 본교 환산 성적은 교내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

③ 중간시험을 응시하고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은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와 교류중인 해외대학교에서 유학할 경우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을 학점화 할 수 있다. 학생은 유학이전에 이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여 국제협력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만약 유학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점인정 요청을 할 수 있다.(이로 인한 조기졸업은 없다.) (개정 2012. 3. 1.)

⑤ 파견대학에 본인 전공과목 및 유사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강한 과목은 전공교수의 동의하에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28)

⑥ 매 학기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최대 18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17. 8. 28, 2019. 8. 29)

제10조 (준수사항)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2.3.1)

①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② 해외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서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③ 파견 및 교환학생은 해당 교류대학에서 수업 종료와 더불어 귀국해야한다.
- ④ 해외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
- ⑤ 교류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 단, 국가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인하여 귀국하게 될 경우,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0. 11. 9.)
- ⑥ 교환 및 파견학생은 외국대학 및 본교에서 지정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⑦ 파견 및 교환학생은 파견 및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연수에 참여하는 해당교류대학 기숙사 또는 지정숙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⑧ 등록은 본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비 및 기타 현지 발생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⑨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대학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교환 및 파견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반되는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20. 11. 9.)

제11조(복학) 해외유학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본 대학교 국제협력원에 귀국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2.3.1)

제 3 장 단기 해외연수 (장 신설 2012.3.1)

제12조(자격) ① 단기 해외연수 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본교에 등록, 수강하는 재학생이어야 한다.

② 지원자격은 제2장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 지원자격규정을 준용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제협력원에서 별도로 정할수 있다.(신설 2017. 8. 28)

제13조(신청절차) 단기 해외연수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협력원에 제출한다.

제14조(제출서류) 단기 해외연수에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발) 단기 해외연수생의 선발은 국제협력원에서 주관하고, 국제협력원의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한다.

제16조(학점인정) ① 연수 종료 후 해당 교류대학의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원에 제출하며, 심의 후 다음 학기에 학점을 인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8. 28)

1. 연수 종료 후 휴학을 할 경우(질병또는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2. 연수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에 따른 중복학점 인증

② 학점인정 기준은 학칙시행규칙 제109조의 2에 따른다.

제17조(준수사항) 단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② 단기 해외연수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③ 단기 해외연수생은 연수기간이 끝나면 귀국보고서와 해당대학 및 연수기관이 발행한 이수증을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국제협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단기 해외연수기간 및 출입국상에 발생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
- ⑤ 해당대학 및 연수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학칙준용)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대학교와 유학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

제 4 장 본 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 (장 신설 2012.3.1)

제19조(자격) 본 대학교에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본 대학교(대학원 포함)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 학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② 소속 대학(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자

제20조(입학허가) 본 대학교에 유학하고자 하는 교환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협력원에 제출 후 교무처의 심의 후 최종 승인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21조(유학기간 및 신분)

- ①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교환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에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

제22조(등록금 납부) 외국인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이외 기타 경비(기숙사비 등)는 본 대학교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협약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① 일반 교환학생 : 소속대학에 등록금 납부
- ② 자비 교환학생 : 본 대학교에 등록금 납부(입학금 제외)

제23조(장학혜택)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초청된 학생에게는 본 대학교와 해당 교류대학간의 협의에 따라 장학혜택이 부여된다.

제24조(교과과정 이수)

- ① 교환학생의 이수학점은 매 학기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8. 29.)
-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환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한다.

제25조(준수사항) 교환학생으로 본 대학에 수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② 교환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③ 교환학생은 유학기간이 끝나면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④ 국내 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⑤ 교환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는 동안 본 대학교의 학칙을 위반했거나, 소속 학과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 귀국시키고 파견대학에 통보한다.
- ⑥ 외국인 교환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학칙준용) 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파견된 교환학생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파견된 학생 및 2003년 복학 학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해외유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